

# 아르메니아(Armenia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, 1964년
- 현행법 : 2002년(국가연금), 2003년 시행; 2010년(개인계좌); 2013년(공공복지); 2010년(소득세), 2013년 시행; 2014년(선출 관료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의무개인계좌, 사회부조제도
  - ※ 2014년 1월 1일, 197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출생한 근로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는 의무개인계좌가 도입됨. 2018년 7월 1일, 의무가입 범위가 출생일자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확대됨. 세수로 운영되던 의무사회기여제도는 2010년 제정된 소득세 관련 법령으로 대체되었지만,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구조는 유지됨

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: 근로자 및 자영자
  - 특별제도 : 군인, 경찰, 판사, 선출 관료, 검사 및 동 조항에 나열된 대상자의 가족
- 사회부조 : 아르메니아 국민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 : 개인 소득세의 일부가 재원으로 사용됨
    - 가입자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, 출산급여, 산업재해급여 재원으로 사용됨
  - 의무개인계좌 : 총 월소득의 5%(일시적으로 2.5%로 감소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500,000 drams
- 자영자
  - 사회보험 : 개인 소득세의 일부가 재원으로 사용됨
    - 자영자 보험료는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 재원으로 사용됨
  - 의무개인계좌 : 연 신고소득의 5%(일시적으로 2.5%로 감소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고소득은 6,000,000 drams
-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없음
- 의무개인계좌 :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필요시 보조금 지급
- 의무개인계좌 : 총 월 소득의 5%(일시적으로 7.5%로 증가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500,000 drams
- 사회부조 : 총 금액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최소 25년 이상인 63세;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전 20년 또는 이후 10년의 위험하거나 고된 직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5년 이상인 59세;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전 15년 또는 이후 7.5년의 위험하거나 고된 직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5년 이상인 55세
  - 보험적용 고용기간은 대학 재학기간, 군복무기간, 자녀양육기간,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포함함
  - 부분연금 : 근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경우 감액연금 지급
  - 연기연금 : 연금은 연기될 수 있음
  - 노령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
- 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 : 63세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보험적용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65세
  - 노령사회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1급 장애인(근로능력 완전상실자이며 상시간병필요), 2급 장애인(근로능력 완전상실자 이나 상시간병 불필요), 3급 장애인(근로능력 부분상실자)으로 판정되어야 함. 요구 보험적용 근로기간은 장애가 시작된 나이에 따라 달라짐; 23세 이하일 경우 최소 2년, 23~26세의 경우 최소 3년, 29~31세의 경우 최소 5년, 32~34세의 경우 최소 6년, 35~37세의 경우 최소 7년, 38~40세의 경우 최소 8년, 41~43세인 경우 최소 9년, 44세 이상의 경우 보험적용 근로기간 최소 15년 이상
  - 보험적용 근로기간은 대학 재학기간, 군복무기간, 자녀를 돌보는 기간, 실업 급여 수령 기간을 포함함
  - 전문 의료 위원회가 장애의 정도를 판정함
  - 장애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
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
  - 장애인으로 판정되어야 하며, 사회보험 장애연금에 요구되는 보험적용 근로기간보다 적은 수의 보험적용 근로기간 년도 수를 가졌어야 함
  - 장애사회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
- 장애보조금(의무개인계좌) : 1급, 2급, 3급 장애인으로 판정되어야 함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음
 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사망자의 사망 시 근로하고 있지 않았고 어떠한 다른 연금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, 사망자의 자녀, 형제자매, 또는 14세 미만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자; 18세 미만의 한쪽 부모를 잃은 아이(18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면 연령제한 없음);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의 고아(18~23세의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학생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); 18세 미만 특정 조건 하의 피부양 형제자매, 손자녀
  - 유족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
 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음.
 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사망자의 사망 시 근로하고 있지 않았고 어떠한 다른 연금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, 사망자의 자녀, 형제자매, 또는 14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자;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의 고아(18~23세의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학생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)
-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 : 가입자 사망 시 지급
- 장제비(사회보험 및 사회부조) : 노령 또는 장애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연금제도는 기본연금과 보너스연금으로 구성됨
  - 기본연금 : 월 16,000 drams
  - 보너스연금 : <(첫 10년의 보험적용 가입기간의 각 년도마다 월 800 drams + 10년을 초과하는 보험적용 가입기간 각 년도마다 월 500 drams) X 근로 기간에 근거한 개별 계수> 지급
  - 최고 노령연금액은 없음
  - 부분연금 : 감액연금이 지급
  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- 노령급여(의무개인계좌)

- 가입자는 3가지의 지급방식 중에 선택 가능 : 연금을 구매하거나, 계획된 인출액을 지급받거나, 일시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음
- 급여는 <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총 근로자 및 정부 보험료 납입 총액 - 관리비>임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월 16,000 drams 지급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연금제도는 기본연금과 보너스연금으로 구성
  - 기본연금 : 기본연금의 140%가 1급 장애인에게 지급, 2급 장애인에게 120%, 3급 장애인에게 100% 지급
  - 기본연금은 월 16,000 drams
  - 보너스연금 : <(첫 10년의 보험적용 가입기간의 각 년도마다 월 800 drams + 10년을 초과하는 보험적용 가입기간 각 년도마다 월 500 drams) X 근로 기간에 근거한 개별 계수> 지급
  - 최고 장애연금액은 없음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1급 장애인에게 월 21,500 drams, 2급 장애인에게 월 19,000 drams, 3급 장애인에게 월 16,000 drams 지급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- 장애보조금(의무개인계좌) : 계좌 잔고는 일시금으로 지급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배우자연금 : 기본연금의 100% + 보너스연금의 50% 지급
  - 기본연금은 월 16,000 drams
  - 보너스 연금은 <사망자의 11년 이상의 보험적용 근로기간 각 년도 수마다 월 500 drams x 근로 기간에 근거한 개별 계수>
  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지급 중지
  - 고아연금 : 기본연금의 500% + 보너스연금의 50%
  - 기본연금은 월 16,000 drams
  - 보너스연금은 사망한 부모가 보험적용 근로기간에 근무했던 각 년도마다 월 500 drams 별로 지급
  - 최고 고아연금액은 없음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배우자에게 월 16,000 drams; 고아에게 월 80,000 drams 지급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-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 : 가입자 축적 자산의 가치가 나뉘지며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개인계좌로 이전됨. 만약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이 개인계좌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라면, 축적된 자산은 그들에게 일시금 또는 최대 5년까지의 정기 연금의 형태로 지급

- 장제비(사회보험 및 사회부조) : 200,000 drams의 일시금 지급
  - 급여조정 : 가용자원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정

---

## 7 관리운영기관

---

- 노동사회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)
  - 정책에 대한 책임
  - <http://www.alsa.am/>
  
- 지방사회보장부(State Social Security Office)
 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를 관리함
  - <http://www.ssss.am/>
  
- 검증된 연금관리회사가 의무개인계좌를 관리함.
  
- 국가세수위원회(State Revenue Committee)
  - 보험금 징수
  - <http://www.petekamutner.am/>

<2018년 ISSA 자료>